기후변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해외 사례의 검토-

2019. 6. 21.

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변호사)

ELPS

목 차

1. California v. General Motors

사건의 개요

- 2006. 9. 20. 원고(California) => 피고(6개 자동차 회사) / 연방지방법원(N.D.Cal.)

✓ 피고 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공중이 입게 되는 공적방해(public nuisance)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사건의 경과

- 2007. 9. 17. 연방지방법원(N.D.Cal.)은 정치적 사안의 원칙(political question doctrine)을 들어 원고 청구 각하 => 원고 항소
- 2009. 6. 19. 원고는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온실가스 규제 및 오바마 정부의 국가 연료 효율기준 강화 등을 이유로 소 취하

ELPS

사건의 쟁점

- 정치적 사안의 원칙의 적용 여부

✓ 1심법원은 기후변화는 의회와 행정부가 다루어야 할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각하

사건의 의의 및 평가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
- Connecticut v. American Electric Power(AEP) 1심 판결(2005)의 영향
- Massachusetts v. EPA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2009) 이후 EPA도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시작, 오바마 정부는 피고 자동차 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료 효율 기준을 강화 => 소기의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소 취하

2. Connecticut v. American Electric Power(AEP)

사건의 개요

● 2004. 7. 22. 원고(Connecticut 주 등)=> 피고(6개 전력회사) / 연방지방법원(S.D.N.Y.)

✓ 공적방해(public nuisance)를 이유로 각 피고에게 매년 줄어드는 온실가스 배출한도(cap)를 정하도록 하는 금지청구(injunctive relief) 소송 제기

사건의 경과

● 2005. 9. 19. 연방지방법원(S.D.N.Y.)은 기후변화는 정치적인 문제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원고 청구 각하 => 원고 항소

● 2009. 9. 21. 제2연방항소법원(2d Cir.)은 1심법원의 판단 번복하고, 과학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다고 하여 사법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의 공적 피해 사이의 충분한 인과관계(fairly traceable)를 인정 => 피고 상고

● 2011. 6. 20. 연방대법원은 Clean Air Act에 의하여 연방보통법(federal common law)이 대체되어(displaced) 원고 주장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상고 인용

ELPS

2. Connecticut v. American Electric Power(AEP)

사건의 쟁점

- 정치적 사안의 원칙의 적용 여부

✓ 1심법원은 정치적 사안의 원칙 적용하여 원고 청구 각하하였으나, 2심법원은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입각하여 연방보통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

- Displacement rule

✓ 연방대법원은 Clean Air Act에 의하여 연방보통법이 대체되었으므로 원고 청구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다는 이유에서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음.

사건의 의의 및 평가

- 정치적 사안의 원칙 적용을 배제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적극적 입장
- 연방대법원에서 Massachusetts v. EPA 사건 판결(2009) 이후 Clean Air Act가 온실가스 규제에 관하여 연방보통법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연방보통법에 근거한 불법행위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 지게 됨

ELPS

사건의 개요

- 2008. 2. 26. 원고(Kivalina 주민들) => 피고(온실가스 배출회사들) / 연방지방법원(N.D.Cal.)

✓ 피고 회사들이 발생시킨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주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건의 경과

- 2009. 9. 30. 연방지방법원(N.D.Cal.)은 기후변화는 정치적 문제로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원고에게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따른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각하 => 원고 항소
- 2012. 9. 21. 제9연방항소법원(9th Cir.)은 원고 청구의 근거인 연방보통법이 명문의 Clean Air Act로 대체되었으므로 원고 청구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원고 항소 기각 => 원고 상고
- 2013. 5. 20.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코멘트 없이 원고 상고 기각

사건의 쟁점

- 정치적 사안의 원칙의 적용 여부

✓ 1심법원은 정치적 사안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 청구 각하

- 연방헌법 제3조에 따른 원고적격

✓ 1심법원은 원고가 피고 행위가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실질적인 개연성(substantial likelihood)'이나 원고 피해의 '근원(seed)'이 피고의 온실가스 배출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fairly traceable)'된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인과관계(causation)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Displacement rule

✓ 2심법원은 Clean Air Act에 의하여 연방보통법이 대체되었으므로 원고 청구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다는 이유에서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음.

사건의 의의 및 평가

- 기후변화 불법행위 소송의 난점으로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실제 문제됨
- 2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Clean Air Act와 그에 따른 구체책들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이 EPA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이전에 발생한 "과거의 손해배상청구 이슈"도 "직접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
-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과거의 손해배상 이슈 포함) 모든 종류의 사건이 Clean Air Act로 인하여 종합적으로 규제됨이 분명히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연방보통법에 근거한 기후변화 불법행위 청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4. Lliuya v. RWE AG

사건의 개요

- 2015. 11. 원고(Lliuya) => 피고(RWE) /독일 Essen 지방법원

✓ 페루 농부인 원고가 독일의 최대 전력 생산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기후변화로 인한 페루 Huaraz 지역의 예방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원고 청구 17,000유로 = 예방조치에 필요한 총 예상비용의 0.47% = 피고의 연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 추정치

사건의 경과

- 2016. 12. 15. 독일 Essen 지방법원은 피고의 온실가스 배출과 원고가 주장 위험 및 비용 사이에 "선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배척 => 원고 항소
- 2017. 11. 30. 독일 Hamm 고등법원은 1심법원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뒤집고, 추가적인 증거와 전문가 의견이 증거조사 단계에서 제출될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 수용 => 현재 증거조사 단계 계류 중

ELPS

4. Lliuya v. RWE AG

사건의 쟁점

- 인과관계 인정 여부(피고 온실가스 배출 => 페루 Huaraz 지역 빙하 용융으로 인한 피해)

✓ 1심법원은 기후변화의 복잡성은 분명한 인과관계를 추적하기 불가능하게 하고, 기후변화에는 다양한 공동기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과 특정한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인과관계를 부정

✓ 2심법원은 피고의 온실가스 배출이 Huaraz 지역에 발생할 위험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인, 현존하는 위험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Huaraz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의 공동기여자일 수 있는 본 사건에서, 부분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배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사건의 의의 및 평가

-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의 발전이 기후변화 불법행위 소송의 난점이었던 가해자 특정,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에 기여(RWE의 기여도 0.47% 특정)
- 과학적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려는 2심법원의 태도
-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꾸준한 발전 => 기후변화 불법행위 소송의 성공가능성 높아질 것을 기대

ELPS

5. City of Oakland v. BP p.l.c.

사건의 개요

- 2017. 9. 19. 원고(San Francisco, Oakland) => 피고(5대 화석연료 업체) /주법원(Cal. Super. Ct.)

✓ 원고는 California주의 공적방해법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기후변화로 상승하는 해수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방조제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을 구하는 소송 제기

사건의 경과

- 피고들은 연방법이 우선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연방법원으로의 관할 이송(remove)을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 사건을 주법원에 환송할 것을 요청(motion to remand)
- 2018. 2. 27. 연방지방법원(N.D.Cal.)의 Alsup 판사는 이 사건은 연방보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임
- 2018. 6. 25. 동 법원은 기후변화는 사법부가 아닌 정치적 부처(political branch)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함을 주요 이유로 원고 주장 배척 => 원고 항소, 현재 제9연방항소법원 계류 중

ELPS

5. City of Oakland v. BP p.l.c.

사건의 쟁점

- 관할 이슈(주법원 vs. 연방지방법원)

✓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연방보통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문제로서 연방지방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 다만,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Connecticut v. American Electric Power(AEP) 사건이나 Kivalina v. ExxonMobil 사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연방보통법이 Clean Air Act로 대체되지는 않는다고 판시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위 두 사건과 차별화되는 지점에 관하여, 외국에서의 배출행위는 재판관할 밖에 있고, 국제 문제에 관하여는 의회와 행정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없다 하고, 다른 한편, 기후변화를 둘러싼 쟁점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고 청구 배척

사건의 의의 및 평가

- Connecticut v. American Electric Power(AEP) 사건 및 Kivalina v. ExxonMobil 사건 결과에 비추어 원고는 주법에 근거하여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연방지방법원에서 판단
- 주법에 의한 구제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역외 적용 이슈 및 일종의 정치적 사안의 원칙을 이유로 여전히 법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한계를 보임

6. County of San Mateo v. Chevron

사건의 개요

- 2007년, 원고(San Mateo County 외) => 피고(37개 화석연료 회사)/ 주법원(Cal. Super. Ct.)

✓ 원고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에게 California 주의 공적방해법에 근거하여 주법원(Cal. Super. Ct.)에 기후변화 완화 조치를 위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사건의 경과

- City of Oakland v. BP p.l.c. 사건 같이 피고들은 원고 주장이 연방보통법에 기초한 것이라는 이유로 연방법원으로의 관할 이송을 주장, 원고는 주법원으로의 환송을 요청
- 2018. 3. 16. 연방지방법원(N.D.Cal.) Chhabria 판사는 2018. 2. 27. 내려진 City of Oakland v. BP p.l.c. 사건 결정과 정반대로, 본 사건을 주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결정 => 피고 항소, 현재 제9연방항소법원 계류 중

ELPS

6. County of San Mateo v. Chevron

사건의 쟁점

- 관할 이슈(주법원 vs. 연방지방법원)

✓ 연방지방법원(N.D.Cal.)은 Clean Air Act가 연방보통법 주장을 대체한다고 판시하였던 Connecticut v. American Electric Power(AEP) 사건 및 Kivalina v. ExxonMobil 사건 이후에는 주간(interstate) 대기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연방보통법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연방보통법이 연방 규범에 의하여 대체된 이상 주법에 근거한 주장이 과거에 작동하였던 연방보통법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

✓ 이 사건이 Kivalina v. ExxonMobil 사건과 매우 유사한 유형임을 인정

사건의 의의 및 평가

- 기존 Connecticut v. American Electric Power(AEP) 사건 및 Kivalina v. ExxonMobil 사건, 그리고 City of Oakland v. BP p.l.c. 사건과 비교하여, 주법(state law)에 의한 주법원의 판단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불법행위 소송의 새로운 길을 열어 두었다는데 의의

ELPS

7. City of New York v. BP p.l.c.

사건의 개요

- 2018. 1. 9. 원고(뉴욕시) => 피고(5대 화석연료 회사들)/ 연방지방법원(S.D.N.Y.)

✓ 원고는 피고들이 야기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더 빈번하고 강력해진 열선, 극단적인 기상변화, 해수면 상승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그리고 앞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사건의 경과

- 2018. 7. 19. 연방지방법원(S.D.N.Y.)은 원고 주장이 온실가스의 '초경적(transboundary)' 배출에 근거하고 있고, 통일적인 결정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연방보통법의 규율을 받는데, Clean Air Act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모든 연방보통법 주장을 대체한다는 기존 법리에 따라 원고 주장을 배척 => 원고 항소, 현재 제2연방항소법원 계류 중

ELPS

7. City of New York v. BP p.l.c.

사건의 쟁점

- Displacement Rule, 정치적 사안의 원칙 등

✓ 연방지방법원(S.D.N.Y.)은 원고의 청구가 연방보통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나 이는 Clean Air Act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런 경우 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배척하였으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에 관한 규율은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는 정치적 부처(political branches)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판시

사건의 의의 및 평가

-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기후변화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전적으로 제한되는 결과 발생 우려

ELPS

8. Rhode Island v. Chevron

사건의 개요

- 2018. 7. 2. 원고(Rhode Island 주) => 피고(21개 화석연료 회사들)/ 주법원(R.I. Super. Ct.)
- ✓ 원고는 피고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더 빈번하고 강해진 홍수, 극단적인 기상현상, 가뭄 등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주가 이미 입은, 앞으로 입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 ✓ 공적방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해태(failure to warn), 고의 또는 과실에 설계 하자(design defect), 불법 침범(trespass), 주환경법의 위반 등을 청구원인으로 함

사건의 경과

-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들은 이를 연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주법원으로 환송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 연방지방법원(D.R.I.)에서 이 점이 다투어지는 중임

사건의 의의 및 평가

-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기후변화 불법행위 소송 중 처음으로 주(State)가 원고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
- 다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관할 문제 등을 비롯해 앞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쟁점은 같이할 것으로 보임

ELPS

결 론(시사점)

✓ 대부분의 사건에서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에 관한 실체적 판단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정치적 사안의 원칙, Displacement rule, 재판관할권 등의 이유로 소송요건의 문턱도 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한계 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축적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를 야기한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자 및 그 기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해자 특정,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이라는 난점 극복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임

✓ 해외 사례들은 기후변화 불법행위 소송이 여전히 초기단계에 있음을 보여주지만, 기후변화 소송이 아직 본격적으로 대두되지 아니한 우리나라에는 선례로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

ELPS

감사합니다.

ELPS